

국립해양조사원 남해해양조사사무소 단시간 근로자 채용 공고

국립해양조사원 남해해양조사사무소 관할 부산 조위관측소에서
근무할 단시간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국립해양조사원 남해해양조사사무소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 예정 업무	근무지	근무기간
조위관측원 (단시간 근로자)	1명	조위관측소 시설물·관측 장비 및 기본수준점표 점검, 관리 해수기준면(조석) 측정 및 수온, 염분 관측 월간보고서 작성·제출	부산 조위관측소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7가 80 부근)	계약일로부터 ~ '24. 12. 31.

※ 근무 결과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을 시 1년 단위 재계약 체결 예정

2 응시 자격

- 응시자 성별 및 학력, 경력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복수 국적자가 아닌 사람)
-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에 등록되어있는 자
-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4조(정년)에 따라
만 65세 정년(고령자 친화적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4조(채용결격사유)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

○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4.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근무 조건

○ 직종 및 고용 형태 : 조위관측원 / 단시간 근로자

- *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규정 제2조제3항에 근거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에 비해 짧아 단시간 근로자(비공무원)로 고용

○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결격 사유가 없을 시 1년 단위 재계약 체결 예정

- 근무일 및 시간 : 주 6일(월~토) / 1일 2시간(9:00~11:00, 1주 12시간)
 - * 일요일 및 공휴일 무급 휴무
- 보수 : 시급 12,000원(보험사항 : 국민연금(개인선택), 고용보험, 산재보험)
 - * 단시간 근로자(월60시간 미만) 건강보험 제외(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4

채용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 공고	2024. 5. 20.(월) ~ 6. 3.(월)	홈페이지 게시 (국립해양조사원, 부산일자리정보망, 워크넷)
원서 접수	2024. 5. 21.(화) ~ 6. 3.(월)	국립해양조사원 남해해양조사사무소 해양과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2024. 6. 5.(수)	서류심사 합격자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면접 심사	2024. 6. 10.(월)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6. 24.	최종 합격자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 2024. 5. 21.(화) ~ 2024. 6. 3.(월) 18:00 까지
- 접수 장소 : 국립해양조사원 남해해양조사사무소
 - * 주소 : (우)48755 부산광역시 동구 총장대로351 본관 5층 남해해양조사사무소
 - ** 채용 및 응시원서 접수 문의 등 담당자 연락처 : 해양과(051-638-9810)
- 접수 방법 : E-mail, 등기우편, 방문 접수 중 선택
 - E-mail 접수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제출
 - * E-mail 주소 : dsyoon0830@korea.kr
 - 등기우편 접수 : 접수 장소로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 *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증' 기재

- 방문 접수 : 남해해양조사사무소 해양과로 직접 제출

* 점심시간(12:00~13:00) 접수 제외

○ 접수 마감 : 2024. 6. 3.(월) 도착분까지

* **등기우편의 경우 6.3.자 소인 인정**,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제출 서류

구 분	수 량	작성 서식	비 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첨부 1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하여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첨부 2	
응시자 서약서	1부	첨부 3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첨부 4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직무(해양,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본	-	-	해당자에 한함

6

채용 방법

□ 1차 전형 : 서류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합격자 결정 기준) 자격요건 적합자 선발(서류적부심사)

○ (불합격자 결정 기준) 응시원서 등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결정

□ 2차 전형 : 면접 심사

○ 서류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 (면접방법) 비대면 화상면접심사
- (면접 장소) 면접자 자택 또는 부산 조위관측소
 - * 면접자 개인 의사 및 자택 내 환경 여부에 따라 면접장소 선택이 가능하나 **카페 또는 PC방 등 공공장소 실시 금지**
- (합격자 결정 기준) 아래의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하고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①공무직 등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자 결정 기준)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했거나,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불합격 결정
- (동점자 처리 기준)
 -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1조에 따라 법정 가점을 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 해양 또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근무지(조위관측소) 기준 근거리 거주자

7

유의 사항

-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따라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채용 공고를 게시한 홈페이지(국립해양조사원, 부산일자리정보망, 워크넷)에 별도 공고함
- 공고문 등의 안내·유의 사항 미숙지, 제출서류 등의 허위 기재,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하고, 시험주관 측에서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응시자(최종 합격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서식 1 참조)하는 경우 반환하고 신청이 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일괄 폐기함

* 반환 요청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다음 날 14일까지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이 취소되거나 채용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응시자는 시험위원과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험주관부서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시험에 응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해당 응시자에 대한 해당 시험위원의 점수는 무효로 함

※ 심사위원(면접) 제척사유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근무경험 관계(같은 부서 근무), 사제지간,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될 만한 친분 등

- 자택에서 비대면 화상면접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면접시간 30분 전 화상 테스트 진행 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 지정된 장소에서 화상면접심사를 실시하는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10분 전까지 시험 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함
- 채용권자는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 후 중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추가 채용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명단은 채용인원에 3배수 내이며, 임용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 또는 다음 채용공고 전까지로 함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 남해해양조사사무소 해양과(051-638-98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첨부 4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

<p>1. <u>공직자</u>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2. '<u>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u>'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3-1. 해당 부패행위로 <u>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u>된 사실이 있는지</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u>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1. 해당 부패행위로 <u>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u>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u></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p>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4 년 월 일

생년월일

응 시 자

(서명)

국립해양조사원 남해해양조사사무소장 귀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 남해해양조사사무소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